

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7.24. 규칙 제679호
개정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3. 3. 7. 규정 제8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본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본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총 5명으로 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③ 일반직위원은 총 8명으로 하며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본교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본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 원 : 본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평의회에서 2명 추천한다.
2. 직 원 : 본교의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직원협의회에서 2명 추천한다.
3. 재학생 : 본교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학생회에서 1명, 대학원 원우회에서 1명씩 추천한다.
4. 본교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본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대학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2명을 위촉한다.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인 일반직위원 : 2년
2. 직원인 일반직위원 : 2년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 1년

4. 본교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
일반직위원 :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의2(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재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7.]

제8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훈련학생처장·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의 장 (이하 ‘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본교의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본교의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본교의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중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총장은 동일 항 내에서 각 목 상호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 재원 활용의 효율성·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작성, 관리) 회계에 관한 장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부
2. 지출원인행위부
3. 지출부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제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기타) 본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제679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는 2016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임명된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017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중 학부 총학생회에서 추천된 자의 임기는 2015년 12월말까지로 하고,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중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된 자의 임기는 2016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부속연구소의 장”을 “연구협력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 칙(제886호, 2023. 3.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